

일시 : 2017.2.11.(토) 10:00

장소 : 대전광역시

유성호텔 2층 프린스홀

2017년도

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

2017. 2. 11. (토)

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

목 차

가. 보고 사항1

- 1) 전차 총회 초록 1
- 2.) 2016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2
- 3)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
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보고의 건 3
- 4)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 4

나. 심의 사항5

- 1)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5

다. 기타 사항6

가. 보고 안건

1) 전차 총회 초록

- 지난 2017년 1월 11일(수) 대한테니스협회 2층 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2017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보고안건으로 대한테니스협회 임원인준 보고, 2017년도 Fed Cup 아시아/오세아니아지역 I 그룹 예선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.
- 심의안건으로는 첫 번째 안건, 감사 선임의 건은 회계감사로 백금선 회계감사를 선임하였고, 행정감사로는 경선을 통해 최경선 행정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. 두 번째 안건으로는, 2016년도 생활체육 동호인 랭킹대회 지정협약금 앨커미스트 계약 완료의 건을 심의하였고, 계약 당사자에 하나인 앨커미스트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와 같은 불이행 계약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후조치를 취하라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원안의 그 부분이 추가 수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.

2) 2016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

- 일 시 : 2017. 1. 24 - 26 / 1.31 - 2.1 / 2.3 (6일간)
- 장 소 : 올림픽공원내 테니스코트 2층 회의실
- 감 사 : 최경선 행정감사, 백금선 회계감사
- 관련근거 : **제24조(임원의 직무) ④**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 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또는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.**제47조(회계감사 등) ①**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 -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,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.

3)

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보고의 건

지난 2017년 2월 7일 (화) 16시 올림픽공원테니스코트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 최종(결산)전체이사회에서 우리 협회 정관 제40조(재산의 구분) 1항 4호에 의거하여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을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함.

* 관련 규정 : 우리 협회 정관 제40조 ①항 4호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
* 관련 내용

-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승인의 건

구 분	2015.12.31 현재 자산 현황	2016.12.31 현재 자산 현황
사단법인 출연금 (문화체육관광부)	1,000,000,000	1,000,000,000
국민체육진흥기금 (대한체육회)	753,116,028	753,116,028
자체자립기금	613,593,464	613,594,464
총 계	2,366,709,492	2,366,709,492

-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

구 분	2016.12.31 현재 자산 현황	비고
사단법인 출연금 (문화체육관광부)	1,000,000,000	
국민체육진흥기금 (대한체육회)	753,116,028	
자체자립기금	613,593,464	
총 계	2,366,709,492	

※ 상기 기금에 대하여 과실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편성하여 사용코자 함.

4)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

지난 2017년 2월 7일 (화) 16시 올림픽공원테니스코트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 최종(결산)전체이사회에서 우리 협회 정관 제4장 제14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및 제46조(예산 편성 및 결산)에 의거하여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함.

* 관련 규정 : 우리 협회 정관 제14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우리 협회 정관 제46조(예산 편성 및 결산)

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 관련 자료 : 2016년도 사업보고서 및 2017년도 사업계획서 유인물.

2016년도 결산보고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유인물.

나. 심 의 안 건

1)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

● 의결주문

우리 협회에는 정관 제7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코자 함.

● 제안사유

우리 협회에는 정관 제7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함

* 관련 규정 : 제 7 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
②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● 내 용

* 관련 자료 : 2016년도 사업보고서 및 2017년도 사업계획서 유인물.
2016년도 결산보고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유인물.

라. 의결사항

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원안대로 승인